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47 발의연월일: 2024. 10. 10.

발 의 자:정동만·최형두·강민국

이종배 · 김기현 · 구자근

박성민 • 고동진 • 김성원

엄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대면 교통수단의 수요가 증가하고, 기존 교통수단으로는 접근이용이하지 않던 장소를 보다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 미비등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형태는 자전거와 유사하나, 제도적으로는 이용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요구하여 실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방법과 부합하지 않아,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있는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

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 2, 제80조제2항제2호라목 및 제160조제1항제10호 신설).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하여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대할 때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0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60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49조의2를 위반하여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 한 대여사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49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인형 이
	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하여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
	업(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대
	여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대
	할 때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
	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
	축하여야 하고,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0조(운전면허) ① (생 략)	제80조(운전면허) ① (현행과 같
	음)
② 시・도경찰청장은 운전을	2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	
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	
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	
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	
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 2. 제2종 운전면허
 가. ~ 다. (생 략)
 <u>석></u>
 3. (생 략)
- ③ · ④ (생 략)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
-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9. (생 략) <u><신 설></u>

② ~ ④ (생 략)

2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60조(과태료) ①
1. ~ 9. (현행과 같음)
10. 제49조의2를 위반하여 임차
인에 대한 운전자격을 확인하
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스
<u>템을 이용하여 임차인의 운전</u>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개

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대여

② ~ ④ (현행과 같음)

사업자